

#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,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9,39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1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,907백만원이 증액된 146,721백만원, 특별회계가 17,719백만원이 감액되어 22,674백만원 임.

#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15,440백만원, 세외수입 12,103백만원, 지방교부세 86,000백만원, 재정보전금 3,00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30,178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,179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8,495백만원임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가 경상예산 43,588백만원, 사업예산 89,923백만원, 채무상환 3,642백만원, 예비비등 기타 9,568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,131백만원, 사업예산 16,786백만원, 채무상환 2,756백만원, 예비비등 기타 1백만원 임.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18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·융자사업(이하"투·융자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·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31조

- ① 예산은 예산총칙,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.
-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,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32조

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한다.